

지게차 조립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

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지게차 조립공 직업관련성	높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1 개 요

원 ○ ○ (51세, 남)는 1990년 3월 D중공업에 입사하여 지게차 조립업무에 근무하다 가 1999년 12월에 퇴사하였다. 1993년부터는 청각장애, 1995년부터는 이명이 발생하 였으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퇴사 후 요양신청을 하였다. 회사에서는 원 ㅇ ㅇ의 근 무부서의 소음이 85dBA 이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.

2 작업환경

워 ○ ○ 가 근무한 산차 생산부는 지게차의 조립 및 부품을 도장하는 부서이다. 직업 병 심의를 위해 연구원에서 산차 부서에 대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84~86dBA 수준을 보였다. 그러나 지게차 조립공정에서 해머를 이용하여 지게차의 베아링을 쳐 서 끼우는 작업이나 타이어 볼팅을 위한 임펙트 작업을 할 때 소음은 충격음으로서 작업강도에 따라 125~135dB 범위로 측정되었다.

3 의학적 소견

업무상 질병 심의를 위해 원 이 이에 대해 연구원에서 청력검사 및 중이 검사(고막운 동계측검사)를 실시하였다. 순음청력검사상 양측성의 고도의 감각신경성난청(우측 3 분법상 65dBHL, 좌측 87dBHL)의 소견을 보였고,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 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다.

4 결 론

원 ㅇ ㅇ의 청력장애와 이명은

- ① 조립작업을 하며 85dBA 이상의 소음수준에 20여년 노출되었으며
- ② 청각검사에서 양측성의 고도의 감각신경성난청의 소견을 보이며
- ③ 이질환력, 약물 복용력, 두부외상 등 청력 손실을 일으킬 만한 병력이 없으므로 소음노출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. 그러나 원 o o 에게 청력장애가 입사 후 3년부터 나타난 것은 D중공업 입사 이전부터 이미 중등도의 난청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.